

—구미시문화예술회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—

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가. 제안일자 : 2004년 6월 19일

나. 제 안 자 : 구 미 시 장

다. 회부일자 : 2004년 6월 21일

라. 상정일자 : 2004년 6월 28일

제90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1차 기획행정위원회
상정, 질의, 토론, 의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

가. 제안설명자 : 기획정보실장 김 인 중

나. 제안이유

- 사용허가시 관장의 재량범위를 최대한 제한
- 부대시설장비 사용료 신설, 폐지 및 현실화
- 영화 및 흥행성 대중공연 유료공연시 사용료 및 보증금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징수 보장
- 회관 유료기획 공연 관람권의 잔표 관리방법 개선

다. 주요내용

- 사용허가(제3조제2항제3호)
 - 기타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옥내집회 및 행사
 - ⇒ 기타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익성 공연, 전시 및 행사
- 부대시설사용료 신설, 삭제 및 현실화(제5조제1항 【별표】)

- 항 목 : 총 23종 ⇒ 28종 (신설 9종, 삭제 4종)
- 현 실 화 : 음향반사판외 3종
- 부대조건 : 신설(5), 삭제(2), 변경(1)
- 영화 및 흥행성(오락적인 쇼, 대중가수의 콘서트 등 유사공연물)이 있는 유료공연의 사용료 인하 및 징수 보장(제5조제2항)
- 사용료 : 제세를 공제한 관람료 수입액의 100분의30
⇒제세공과금을 공제한 관람료 수입액의 100분의10
- 사용료 징수 보장 신설 : 최초사용일 7일전까지 관람권 점인금액의 100분의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세입세출의 현금으로 예치하거나 보증 보험증권 원본을 제출하고 사용종료후 정산 납부
- 보증금 신설(제8조제1항) : 제5조제1항의 사용료 산출금액
- 회관 유료기획공연 관람권의 잔표관리(제11조제5항) : 소각 ⇒ 5년간 보관

라. 참고사항

- 구미시문화예술회관운영조례 제3조, 제5조, 제8조, 제11조

3. 검토보고의 요지 - 전문위원 이 춘 배

- 본 조례안은 공연장 사용허가의 범위, 부대시설사용료 및 흥행성 유료공연의 사용료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, 기획공연 관람권의 잔표관리와 보증금신설 등 회관운영에 따른 관리방법을 개선하기 위한 개정조례안으로 타 조례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음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 략

5. 토 론 요 지 : 생 략

6. 소수의견의 요지 : 없 음

7. 심 사 결 과 : 원안 가결